

<임종성 위원님 요구자료>

1. 아이돌봄서비스 민원 관련

- 서비스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, 사고 접수 현황, 조치현황
- 서비스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민원 접수된 아이돌보미 처벌 및 조치 현황

□ 연도별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민원, 사고 접수 현황, 조치현황

- 연도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건수

(단위 : 건)

구분	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
건수	1,919	180	447	359	310	177	262	316

* 유형별로 분류하여 통계를 추출하기는 어려움

- 사고 접수 현황 및 조치현황

- 별도로 사고 접수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며, 아래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현황으로 대체

□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현황

- 학대를 포함하여 아이돌보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자격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행할 수 있으며, 신체적 폭행의 경우 자격정지(1호 중 가목),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자격취소 조치

구분	제32조 (아이돌보미 자격정지)					제33조 (아이돌보미 자격취소)				
	1호	2호	3호	4호	계	1호	2호	3호	4호	계
'14년	1	1	5	6	13	2	0	0	0	2
'15년	2	0	2	2	6	0	0	1	0	1
'16년	2	1	1	4	8	0	0	0	0	0
'17년	4	1	4	6	15	0	0	0	0	0
'18년	5	2	2	7	16	0	0	0	0	0

* 자격정지 규정

- 1호 :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, 아이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, 아이의 주거지에서 행한 절도 등 불법행위 중 하나 해당 시
- 2호 :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
- 3호 : 제10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
- 4호 :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

* 자격취소 규정

- 1호 :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
- 2호 : 아이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아이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- 3호 : 「아동복지법」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,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
- 4호 : 제32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

작성자 : 여성가족부 가족문화과 사무관 이OO